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7.(화) 총 3매(본문 3)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•과장 고용석, 사무관 허원석, 주무관 남익용 •☎ (044) 201-3573, 3574, 3575
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과장 박병석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•☎ (044) 201-3538, 3542, 3543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

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 · 현장관리 지침 도입, 지속적 현장점검으로 안전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」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- 지난해 발표한 「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」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(全)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 -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,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*에 있고,
 - *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('18. 1. 29.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, 현재 법사위 계류 중)
 -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, 설치·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.
 - 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전부개정(정부입법 추진, '18. 2. 9.~3. 22. 입법예고)

○ 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(크레인 846대)에 대한 **합동 일제점검**(‘17.12.27~‘18.2.9)을 실시했고, 국가안전대진단 기간(‘18.2.5~4.13) 동안에도 **특별점검**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,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**특별팀(TF)***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.

* 「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개선 특별팀(TF)(‘17. 12. 19.~)」: 국토부·발주청·건설업계·임대업체·설치해체업자·노조·학계·시민단체·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

○ 먼저,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(운반·설치·해체 포함)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**확인**하고 **승인**하는 **제도***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.

* 발주청이 임대비용,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,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, 작업자 숙련도,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 사전 확인

*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(‘18. 1. 26.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, 현재 국토위 계류 중)

○ 기중·공중별 **표준작업시간**과 **현장관리 체크리스트** 등이 포함된 「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」을 **마련·배포**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.

○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**실효성 확보**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**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**을 **개선***하고 **매뉴얼도 마련**할 예정이다.

*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(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, 안전작업계획, 표준작업시간,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, 검사 계획, 발주청 협의 계획 등) 신설

○ 아울러,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**타워크레인 일제점검**을 매년 상·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**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**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.

○ 또한 현재 운영 중인 **안전 콜센터***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**정부-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**한다.

* (현행)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콜센터 운영(02-3471-4911, '17.12.27 개시),
→ (추가) 노조(민주노총, 한국노총)도 콜센터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정부에 전달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**안전 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**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 소속·산하 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**법·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**해 나갈 것이며,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**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**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